「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8. 6.

환 경 부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기관대응수칙

유형 : 감염병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리번호 : 20

관련 매뉴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Ⅰ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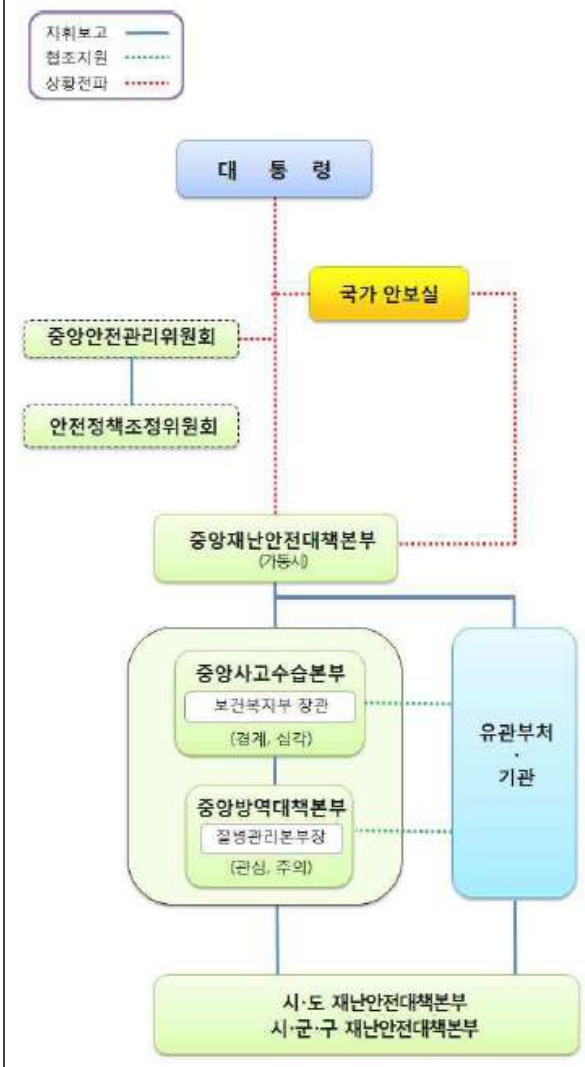

감염병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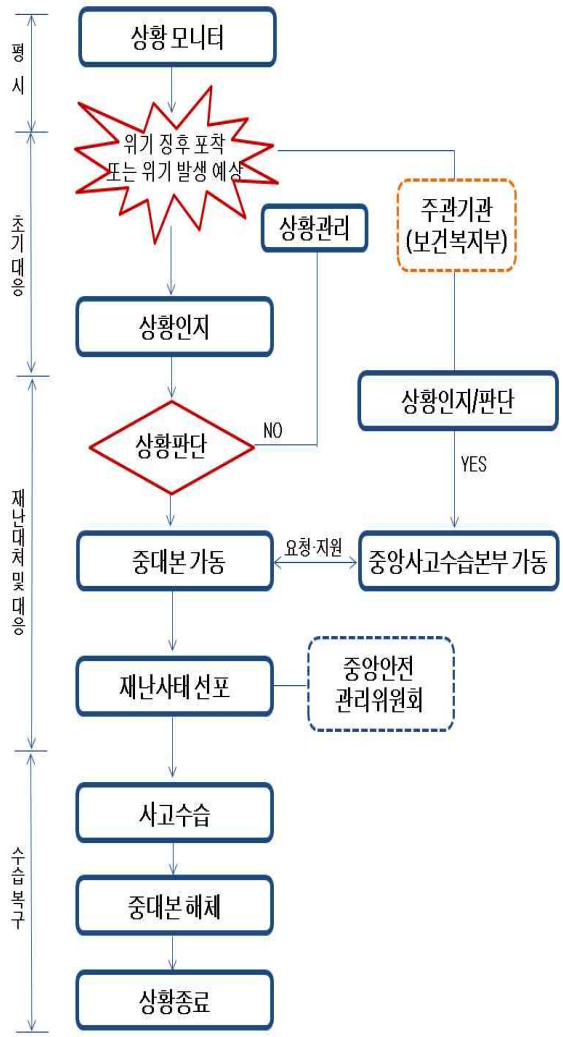

Ⅱ 환경부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구분	주의 - 재난발생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	경계 - 재난발생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단계 -	심각경보 단계 -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	수습·복구 단계
재난대응 소관부서	**주의경보 접수** • **주의경보 접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보고 및 전파** • **보고**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보고대상: 장.차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 **유관기관 전파** - 보고된 상황보고서의 유관기관 전파 - 전파대상: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경계경보 접수** • **경계경보 접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 **상황반 구성 검토** → (구성시) 반장: 생물다양성과장 **보고 및 전파** • **보고**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보고대상: 장.차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 **유관기관 전파** - 보고된 상황보고서의 유관기관 전파 - 전파대상: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심각경보 접수** • **심각경보 접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 **상황반 구성** → 반장: 자연보전국장 **보고 및 전파** • **보고**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보고대상: 장.차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 **유관기관 전파** - 보고된 상황보고서의 유관기관 전파 - 전파대상: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의 종합 및 복구 대책 마련·시행**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총괄** • **재난복구 협력 총괄** •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 **인력·시설·장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조치내용 및 담당기관	**매개 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담당: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등** •**조치내용**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의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밀검사 - 감염병 발생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의 구조 자제 **매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경로 파악** •**담당: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개체수·분포현황 및 이동경로 등 파악 - 필요시 매개 야생동물 포획, 수출·입 허가 금지 조치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담당: 지자체**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지양 권고, 야생동물 접촉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서식지 관리 및 감시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 및 수출·입 통제 조치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담당: 폐자원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시 적정처리 및 모니터링 - 격리의료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자 지도·감독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정보 공유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담당: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야생동물 전문가 현지 파견 및 매개 동물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필요시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 감염 야생동물 확인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담당: 지자체**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환경부 지정) 출입 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강화** •**담당: 폐자원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격리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및 모니터링 강화(당일배출·소각) - 격리의료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자 지도·감독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정보 공유 **국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담당: 생물다양성과, 폐자원관리과, 대변인실**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 언론보도, 언론 변화 모니터링 실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담당: 생물다양성과** •**조치내용** - 감염병 대응 상황반 구성·운영 -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방역 대응 지원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조치내용** - 살처분, 소각, 매몰, 소독, 이동통제 등 조치사항 시달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야생동물 전문가 현지 파견 및 매개 동물 이동경로·확산분석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강화** •**담당: 폐자원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격리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및 모니터링 강화(당일배출·소각) - 격리의료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자 지도·감독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정보 공유 **국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담당: 생물다양성과, 폐자원관리과, 대변인실**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의 종합 및 복구 대책 마련·시행**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재난복구 협력** •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 **인력·시설·장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Ⅲ 환경부 감염병 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매개 야생동물 파악 및 서식지 관리	③ 의료폐기물 관리	④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생물다양성과, 폐자원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폐자원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대변인실
연계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방통위 등
주요 업무	<관계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 ○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장.차관, 관계기관) ○ 관계부처, 지방청 등 비상연락망 유지 ○ 직원 비상소집 및 환경관리대책반 구성·운영 ○ 정부 합동대책반, 중대본 등 참여 ○ 매개 야생동물 감염병 발생 예찰 실시(정부 및 지자체 합동)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상황 관리 방안 마련 ○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질병검사 결과 공유 ○ 매개 야생동물 관련 언론 대응	<매개 야생동물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 매개 야생동물 감염병 발생 예찰 및 질병검사 ○ 대규모 서식지 모니터링 및 분포 조사 ○ 대규모 서식지 출입통제 및 관리 강화 등	<격리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시 적정처리 및 모니터링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시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자 등 지도·감독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결과 공유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 재난관련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모니터링

Ⅳ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 처	주 요 임 무			
	관심 질환별 대책반 운영 단계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심각 범정부적 총력 대응 단계
보건복지부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지속)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필요시 (국내 발생감염병 등) 가동 ○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 대국민 교육·홍보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지속)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시설, 장비, 인력) ○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콜센터 운영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환자 감시체계 운영·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강화 (시설, 장비, 인력) ○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지속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환자 감시체계 운영·강화 및 조기치료체계 구축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강화 (시설, 장비, 인력)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 ○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기소통 강화
행정안전부	○ 지역별 동향파악, 수집자료 분석·보고 및 전파	○ 지역별 동향파악, 수집자료 분석·보고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소방청	○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지속,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강화,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양경찰청	○ 해상검역 및 밀항자 격리, 해상을 통한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 해상검역 및 밀항자 격리, 해상을 통한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 해상검역 및 밀항자 격리, 해상을 통한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 해상을 통한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감시·예찰 ○ 검역·검사 활동 및 여행객 홍보 등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 감시·예찰 체계 운영 강화 ○ 필요시 가축방역협의회 통해 위험 수준 평가 ○ 검역·검사 활동 및 여행객 홍보 강화 등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 필요시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개체군 조사, 역학조사 등 실시	○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와 개체군 조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 감염 야생동물 이동 경로·확산속도 검토를 통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대응 관리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준비태세 점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 군 인력·시설 지원(군의관, 간호장교 등 필수인력 지원)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법무부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국토교통부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등 ○ 항공, 철도, 버스, 대중교통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 항공, 철도, 버스, 대중교통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제한
해양수산부	○ 선박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선박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및 홍보 지원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방안 검토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경찰청	○필요시 인력지원 및 정보 제공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 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 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

Ⅴ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비 고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044-202-2500	
질병정책과	과장	044-202-2510	
질병정책과	사무관	044-202-2508	
질병정책과	주무관	044-202-2507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043-719-710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과장	043-719-719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주무관	043-719-720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789, 7790	

□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감염병협업담당관	044-205-1541 044-205-6158	044-205-8890 044-205-8947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59	044-205-8711
해양경찰청	외사과	044-205-2568/2468	044-205-899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2	02-2100-7995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044-203-6438
법무부	비상기획담당관	02-2110-3012	02-2110-031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8	044-200-5869
	항만운영과	044-200-5780	044-200-578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	044-203-4224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5	043-719-164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38	02-3150-1710

□ 이 매뉴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61호)」 및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근거로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환경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음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대응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사유	부서	협의 기관
< 야생동물관리 분야 >				
`13.5	제정	신규작성	자연자원과	유관기관
'14.7.	실무매뉴얼 형식 변경 및 내용 구체화, 조직·연락처 현행화	안전행정부 작성지침(14.1)에 따른 보완	생물다양성과	유관기관
'14.7.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4.7)에 따른 정비	생물다양성과	유관기관
'16.10.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6.7)에 따른 정비	생물다양성과	유관기관
'18.4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7.12)에 따른 정비	생물다양성과	유관기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 2

제2절 적용 범위 ····· 2

제3절 법적 근거 ····· 3

제4절 용어 정리 ····· 5

제2장 위기유형 및 경보

제1절 위기유형 ····· 8

제2절 전개양상 ····· 8

제3절 위기경보 ····· 9

2.3.1 위기경보 수준 ····· 9

2.3.2 위기경보 절차 ····· 10

2.3.3 위기경보 전파/조치 체계도 ····· 12

제4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13

2.4.1 위기대응 지침 ····· 13

2.4.1.1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13

2.4.1.2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14

2.4.2 판단/고려 요소 ····· 15

제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 16
2.5.1 감염병 관리업무 수행 체계 ····· 16
2.5.2 위기관리 기구 및 역할 ····· 17
2.5.3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 18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경보 ····· 20
3.1.1 상 황 ····· 20
3.1.2 조치사항 및 절차 ····· 20
3.1.2.1 조치 목록 ····· 20
3.1.2.2 조치 내용 ····· 21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23

제2절 주의경보 ····· 24
3.2.1 상 황 ····· 24
3.2.2 조치사항 및 절차 ····· 24
3.2.2.1 조치 목록 ····· 24
3.2.2.2 조치 내용 ····· 25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27

제3절 경계경보 ····· 28
3.3.1 상 황 ····· 28
3.3.2 조치사항 및 절차 ····· 28
3.3.2.1 조치 목록 ····· 28
3.3.2.2 조치 내용 ····· 29
3.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31

제4절 심각경보 ····· 32
3.4.1 상 황 ····· 32
3.4.2 조치사항 및 절차 ····· 32
3.4.2.1 조치 목록 ····· 32
3.4.2.2 조치 내용 ····· 33
3.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35

제4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37
4.1.1 상 황 ····· 37
4.1.2 조치목록 ····· 38
4.1.3 조치 내용 ····· 39
4.1.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44

제2절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45
4.2.1 상 황 ····· 45
4.2.2 조치목록 ····· 46
4.2.3 조치 내용 ····· 47
4.2.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52

제3절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53
4.3.1 상 황 ····· 53
4.3.2 조치목록 ····· 54
4.3.3 조치 내용 ····· 55
4.3.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60

제5장 참고자료

제1절 서 식(공통) ····· 62
5.1.1.「상황보고서」양식 ····· 62
5.1.2.「위기상황 판단/평가회의 보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 63
5.1.3.「보도문」양식 및 작성 예 ····· 64

제2절 참고자료 ····· 64
5.2.1.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 65
5.2.2.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69

5.2.3.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 70
5.2.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72
5.2.5.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74
5.2.6.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환경부) ····· 75
5.2.7. 야생동물 서식밀도 등 실태조사(평상 시) ····· 76
5.2.8.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78
5.2.9. 철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 83

제3절 관계기관 연락처 ····· 91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야생동물 관리)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한 환경부 및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시·군·구)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2절 적용 범위

가. 감염병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하며 보건복지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수행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다음의 상황에 적용

(1)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2)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3)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등

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야생생물이 원인이 되는 감염병에 한함

마. 감염병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시·군·구) 등 야생동물 관리 주체별 역할분담 사항을 정함

제3절 법적 근거

가. 근 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2)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재난 관련법령 및 지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검역법

(5) 의료법

(6) 메르스 대응지침

(7) 사스(SARS) 관리지침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9)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10)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11)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다. 야생동물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3) 야생동물 매개 질병 예방·관리지침

제4절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난관리 단계	①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감염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함

용 어	정 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수단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
방역물자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통칭함
제한적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의료기관, 학교, 직장, 집단 시설 등)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확산	전파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제2장. 위기 유형 및 경보

제1절 위기 유형

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국적 확산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이 국내로 이동, 전국적 규모로 확산

나.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에서 발생한 병원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발생

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 야생동물을 매개로 발생된 감염병이 재출현하여 전국적 규모로 확산

제2절 전개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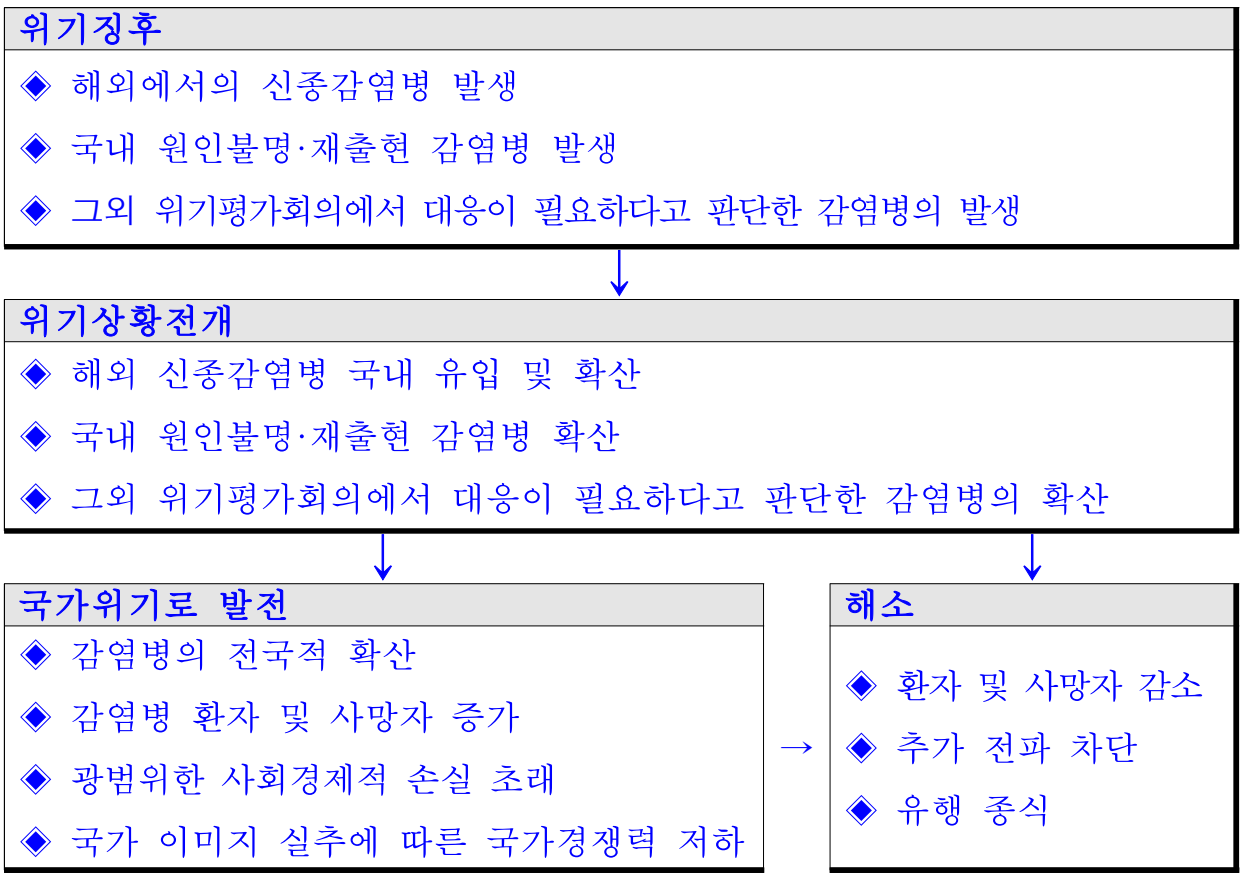

제3절 위기 경보

2.3.1 위기경보 수준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2.3.2 위기경보 절차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기경보를 발령

(2) 위기평가회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의장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및 관련 전문가를 소집하며 필요시 관련 단체 대표자(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을 추가로 소집

(3) 위기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4) 보건복지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감염병협업담당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상황전파 대상기관 연락처 (제5장 제3절 p.90)

(5) 범정부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6)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위기 경보 발령·해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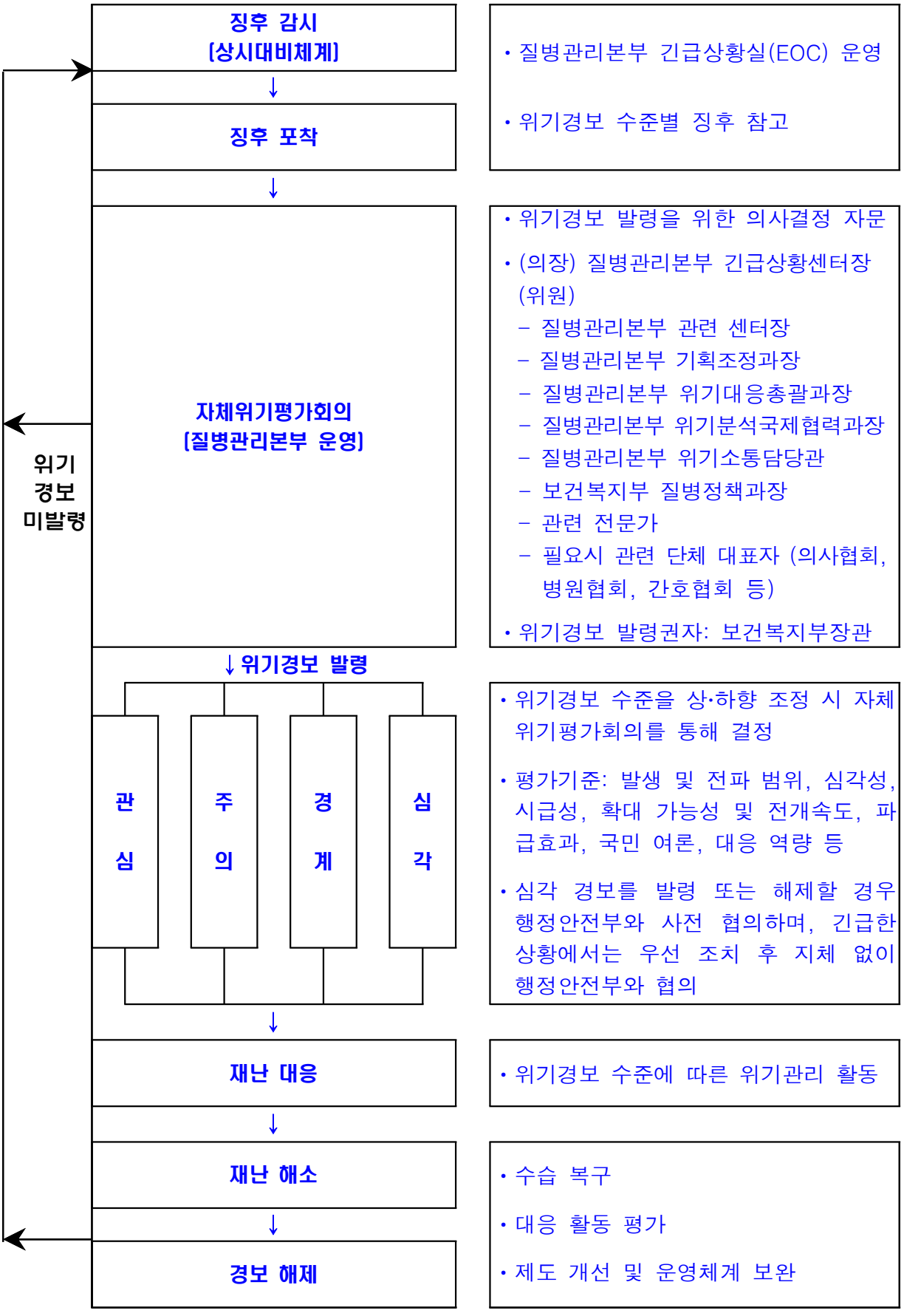
징후 감시
[상시대비체계]
징후 포착
자체위기평가회의
[질병관리본부 운영]
위기
경보
미발령
↓위기경보 발령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재난 대응
재난 해소
경보 해제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운영
• 위기경보 수준별 징후 참고
• 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의사결정 자문
• (의장)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위원)
– 질병관리본부 관련 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
–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 관련 전문가
– 필요시 관련 단체 대표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 위기경보 발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위기경보 수준을 상·하향 조정 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
• 평가기준: 발생 및 전파 범위,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및 전개속도, 파급효과, 국민 여론, 대응 역량 등
•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
• 수습 복구
• 대응 활동 평가
• 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2.3.3 위기경보 전파/조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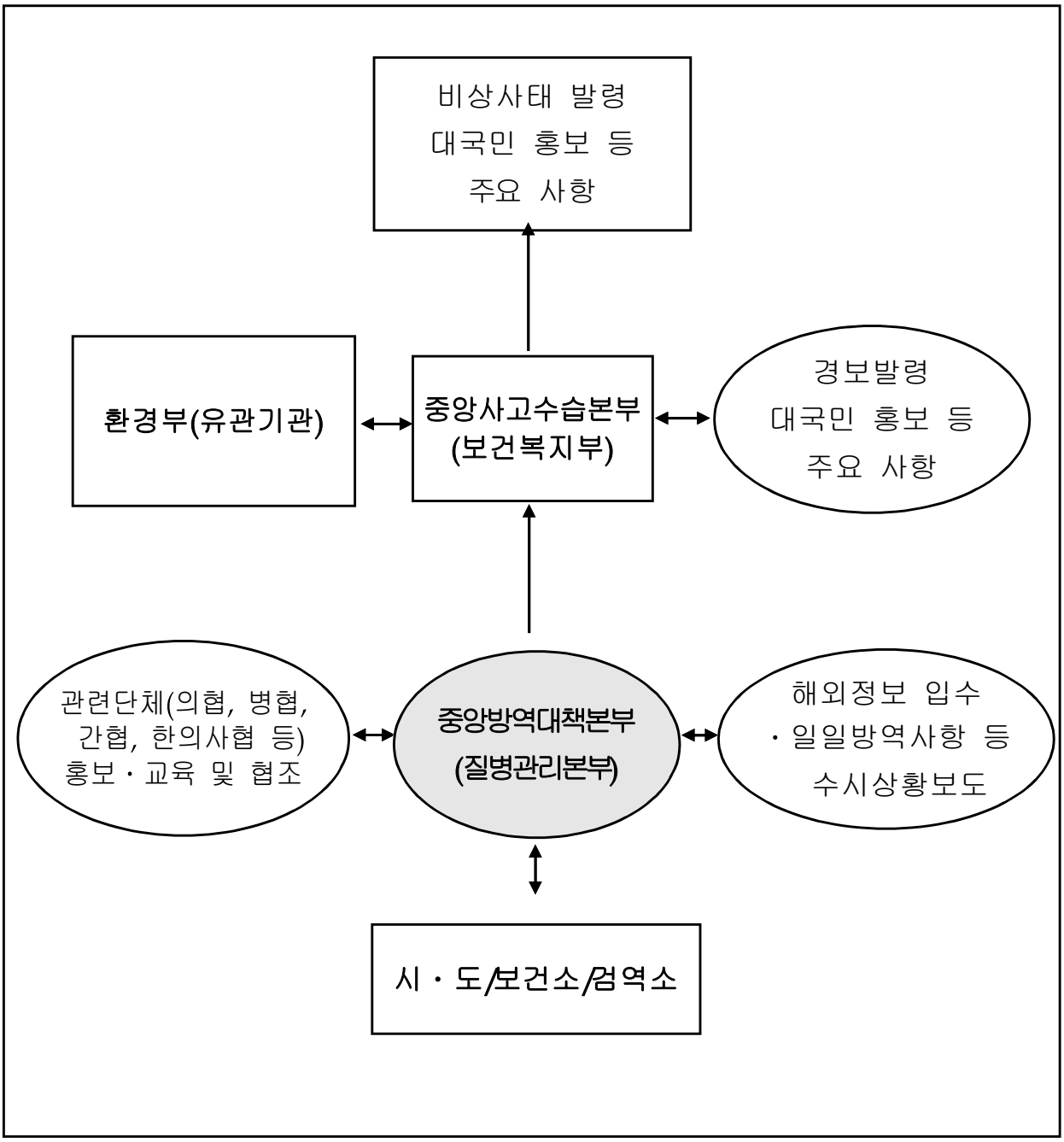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수준을 판단 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환경부)은 그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상황을 전파(소속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위기경보 수준에 적합한 대응지침 마련·지시/통보)

제4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2.4.1 위기대응 지침

2.4.1.1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가. 대응 개념

□ 목표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및 국내확산 조기 차단

□ 대응 방향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종류 및 이동 경로 분석, 외래동물의 수입통제 방안 강구

○ 위기상황 시 야생동물 포획인력 확보 투입 및 즉각적인 현장투입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위기단계별로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 도모

나. 대응 지침

○ 국외 발생동향 감시 및 매개 야생동물 이동 경로 감시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 외래동물 검역자료 공유

○ 소속기관 등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지원체계 구축

○ 주관기관·유관기관·지자체·소속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지자체·소속기관 간 비상연락망 가동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화·신속화로 대국민 소통강화

2.4.1.2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가. 대응 개념

□ 목표 :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확산 조기 차단

□ 대응 방향

○ 신종·재출현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 검사 및 감시체계 강화

○ 주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야생동물 포획 시스템 가동

나. 대응 지침

□ 감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검사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의 야생동물 질병검사 강화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위기 상황 단계별 협력시스템 구축

- 야생동물 질병검사 및 서식지 출입통제 인력 확보 등 범정부적 지원 협의

2.4.2 판단/고려 요소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 시 야생동물에 대한 역학조사, 수의사의 소견 및 진단 등 고려

○ 유행 지역, 규모, 야생동물의 주요 증상, 수의사의 임상소견, 역학조사서,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행 질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황별 대응조치

○ 국외 인접국가의 감염병 유행 균주 및 대응 등 해외 발생동향 자료 및 국제기구(WHO)의 발표 자료 등 분석

○ 해외 유사 대응사례 및 주관기관과의 협조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

제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2.5.1 감염병 관리업무 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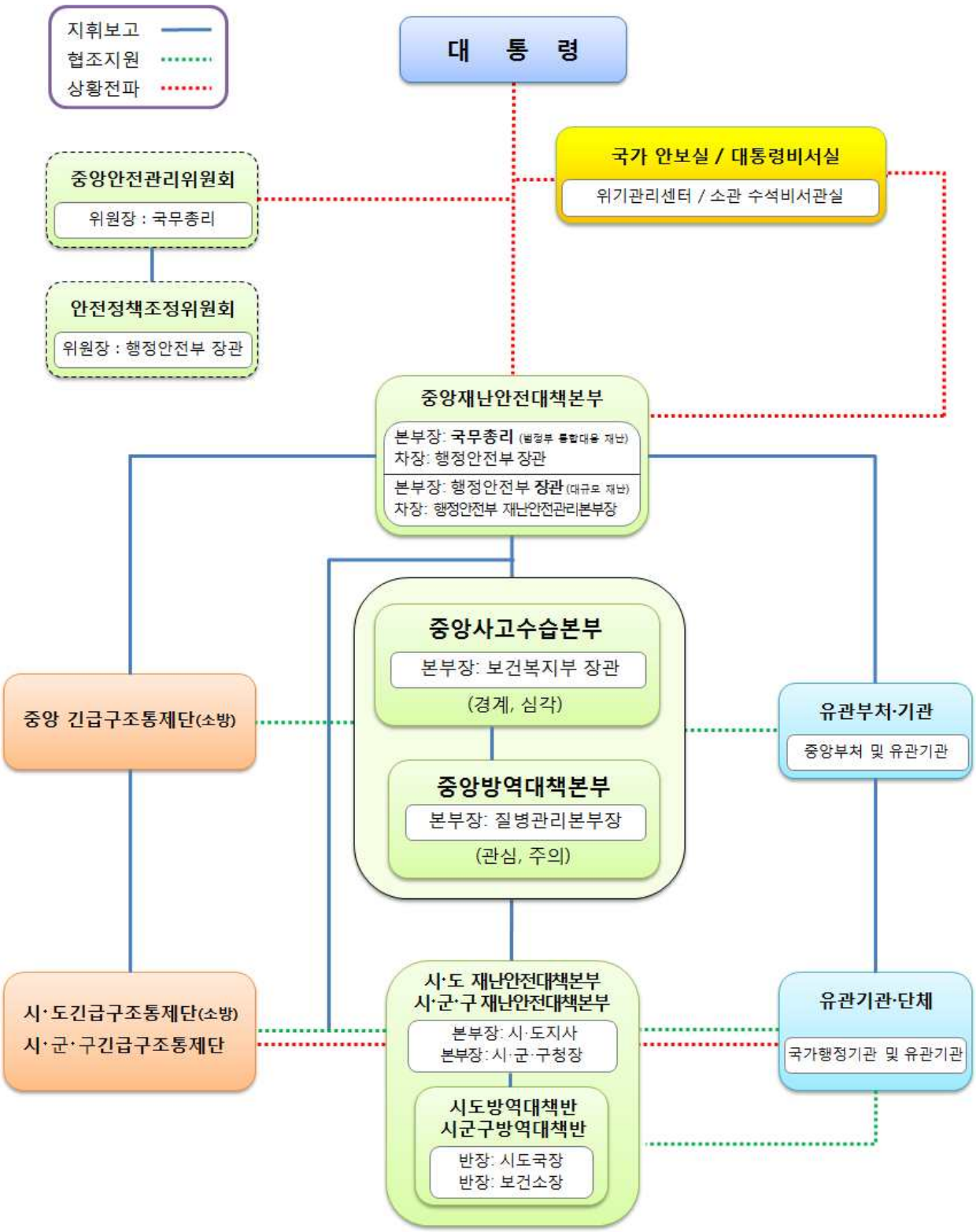

2.5.2 위기관리 기구 및 역할

구 분	역 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감염병 위기 상황 총괄 ○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사고수습 종합상황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 의료자원 관리 총괄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방역조치 총괄 ○ 긴급상황실 운영 ○ 중앙 및 지자체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대응지침 개발·관리 총괄 ○ 감염병 발생 현장 즉각대응팀 운영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총괄 ○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지시 ○ 역학조사 수행 및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총괄 ○ 방역물자 지원 및 관리 및 지원 ○ 감염병 위기 정보 수집·전파·공개 ○ 콜센터 운영 등 대국민 위기 소통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위기정보·상황 관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등을 총괄 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필요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시·도 파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사고 상황 파악 및 종합 대응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중앙 및 지자체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 생활안정, 질서유지, 구급 및 언론대응 등 방역대책반 지원
지역방역대책반 (시·도, 시·군·구)	○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2.5.3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관토록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지자체 방역대책반 체계도는 (부록 3 p.62) 참고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경보

3.1.1 상 황

□ 개요

○ 해외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SARS 등) 발생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개 국가

○ 발생현황 : 신종·재출현 감염병 00지역에서 00명(두) 발생

□ 기타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o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o 생물다양성과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조사 (다-2) 야생동물 예찰업무 강화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전 예방 조치 실시 (다-4)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o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 민간단체

3.1.2.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조사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점검
- 감염병 대응지침 준비·현행화 및 유관기관 공유
-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추가 등 수입 통제 검토
- 매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 경로 파악

○ 조치결과 공유 :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확인 시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2) 야생동물 예찰업무 강화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 점검
-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채취 도구 등 비품물자 확보실태, 시설, 장비 등 점검확인
- 야생동물 질병 예찰 계획 수립 및 질병 검사

○ 조치결과 공유 : 대량 폐사 또는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시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사전예방 조치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질병의심 야생동물의 신고체계 점검

-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채취 도구 등 비품물자 확보실태, 시설, 장비 등 점검확인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수입 통제 검토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야생조류 질병 예찰 계획 수립 o 질병 예찰 결과 전파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매개 야생동물의 국내유입 여부 및 현황 조사 o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o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 채취 물품 확보 실태 점검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2절 주의경보

3.2.1 상 황

□ 개요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을 00지역에서 00개체 확인

□ 기타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3.2.2 조치사항 및 절차

3.2.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o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o 생물다양성과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2) 매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경로 파악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o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3.2.2.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실험실 진단검사 및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의 폐사체, 분변 등 검사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및 정밀 검사 지원
- 감염병 발생 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제

○ 조치결과 공유 : 대량 폐사 또는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시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2) 매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경로 파악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개체수·분포현황 및 이동경로 등 파악
- 필요 시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 통제, 포획, 수출·입 허가 금지 조치 및 지자체 통보

○ 조치결과 공유 : 매개 야생동물 분포 및 이동 현황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발생지역 인근의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지양 권고, 야생동물 접촉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서식지 관리 및 감시 강화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으로의 의뢰·이송 체계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 및 수출·입 통제 조치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포획 및 수출·입 통제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o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 경로 조사 o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o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3절 경계경보

3.3.1 상 황

□ 개요

○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지역 전파 및 대규모 재출현 감염병의 타지역 전파)

□ 세부내용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00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신종 재출현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이 △△지역 등 00개소로 확산되어 00명(개체) 감염

□ 기타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3.3.2 조치사항 및 절차

3.3.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o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o 생물다양성과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다-2)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3)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o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3.3.2.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 치

(다-1)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감염병 검사 인프라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실험실 진단검사·감시 체계 강화
- 필요시 집중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매개 야생동물 서식·이동 현황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시·도/시·군·구의 지역별 질병 발생 동향 감시 강화
-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강화
- 필요 시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 감염병에 감염된 야생동물 확인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 ~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제

○ 조치결과 공유 : 폐사체 발견, 감염병 검사결과, 매개동물 이동 상황을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2)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환경부 지정) 출입 통제 및 순찰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지속

* (예) 발생지역 출입 제한 또는 일시 폐쇄, 오염물건 폐기, 장소 소독 등

(다-3)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 언론보도, 언론변화 모니터링 실시

3.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지역 선정 o 상황실 운영 검토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o 홍보자료 취합, 관계기관 제공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o 관계기관 합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서식·이동현황 모니터링 o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o 관계기관 합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4절 심각경보

3.4.1 상 황

□ 개요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세부내용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00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신종 재출현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00명(개체) 감염

□ 기타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3.4.2 조치사항 및 절차

3.4.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o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o 생물다양성과
(다) 조 치	(다-1)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다-2)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강화 (다-4)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o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3.4.2.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 치

(다-1)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 조치내용

- 감염병 대응 상황반 구성·운영
-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방역 보완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감염병 방역 대응 지원

(다-2)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 조치내용

- 살처분, 소각, 매몰, 소독, 이동통제 등 조치사항 시달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매개 야생동물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제

○ 조치결과 공유 : 폐사체 발견, 감염병 검사결과, 매개동물 이동 상황을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강화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환경부 지정) 출입통제 및 순찰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4)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3.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 선정 o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o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o 대국민 홍보 강화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전문가 현장조사 및 이동 특성 분석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4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4.1.1 상 황

□ 개 요

00년 00월 00일 우리나라와 인접한 00나라 00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00두) 발생 확인)

□ 세부 내용

o 신종 감염병(사스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국가 00지역에서 00명의 환자 및 가축 발생

o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해외 00지역 : 생략

o 조치 사항

- 보건복지부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해외발생 모니터링

- 환경부 :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 및 포획 지원

o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4.1.2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o 생물다양성과
(나) 초동조치지원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다) 대응조치지원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7) 대국민 홍보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라) 후속조치지원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o 생물다양성과

4.1.3 조치 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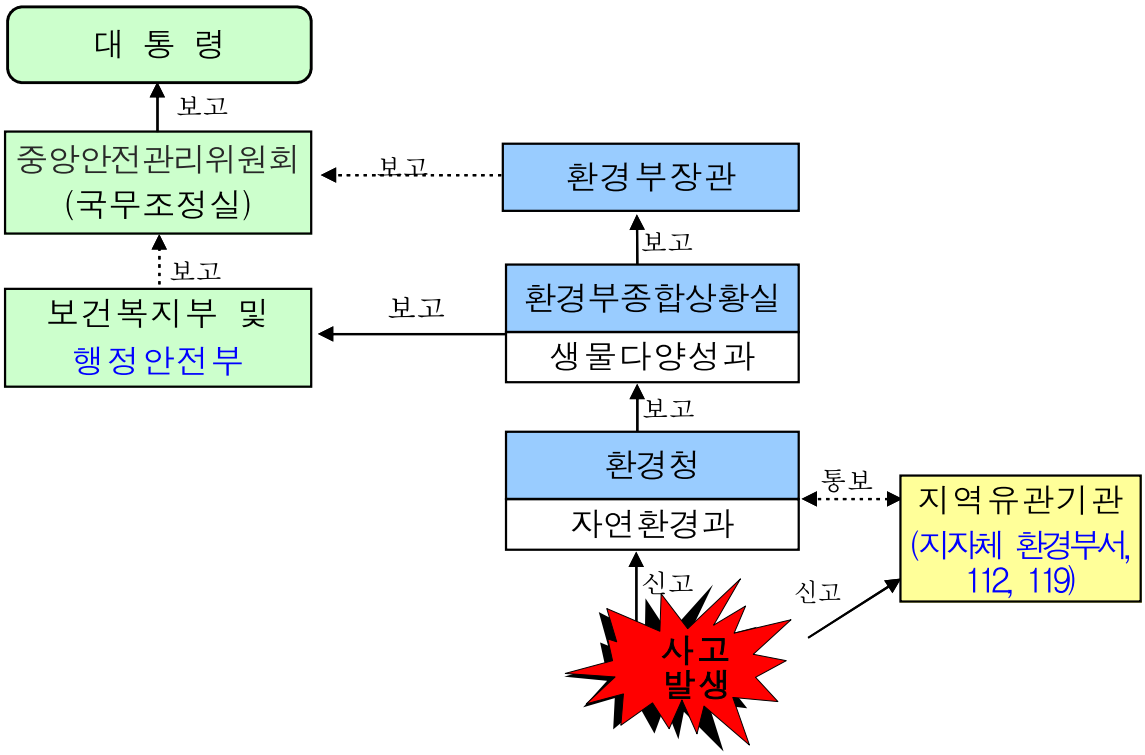

○ 접수처

- 주간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청 자연환경과

· 환경부 : 044-201-7250 (FAX : 044-201-7261)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야간 : 환경부·환경청 당직실

· 환경부 : 044-201-6500 (FAX : 044-201-9280)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감염병 담당자에게 연락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감염병 특성 등

※ 접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접수

(가-2) 보고·전파

○ 상황보고

- 보고 및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서식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는 선구두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 참석인원 : 자체위기평가회의 구성원

○ 회의내용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 출동지시 :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환경청장

○ 출동인원/장비

구 분	검사시료채취반	야생동물모니터링반
출동인원	5명 내외	3명 내외
출동 장비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사진기, 망원경 o Eppendorf tube 또는 코니컬튜브 o 나무젓가락, 위생비닐봉지 o 폴리에스터 소재 면봉 o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o 9×9 종이 랙 o GPS o 분류표기용 라벨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o 관찰장비 : 쌍안경, 망원경, 삼각대, 사진기, 포충망 등 o GPS o 기록장 및 필기도구 o 조사지역 상세지도

※ 현장지휘소에 위치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 진입

○ 피해현황 등 현장 확인 및 초동조치 지원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 주관 : 생물다양성과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강화 계획 수립

○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통제 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 매개 야생동물 생태 특성 및 위치정보 제공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 상황반장 : 자연보전정책관

○ 상황종합 보고 : 생물다양성과장

○ 구성 :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

○ 임무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현장지휘팀 대응활동 지원
- 주관기관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 조치내용

- 검사시료 채취 일정, 지역, 수량 등 세부계획 수립
- 검사시료 운송, 검사수행, 검사결과 보고 체계 확인
- 검사시료 채취 인력 투입 및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 검사시료에 대한 신속한 감염병 검사 및 결과 보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파악·수시보고
- 매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 추적 계획 수립 및 위치 추적장치 부착
- 매개 야생동물 이동 현황 파악·수시보고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이동 예상지역 도출
- 매개 야생동물 서식 현황, 이동특성,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통제 지역 선정 및 통보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현장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정보 및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 주관기관 역학조사위원회의 참석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7)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4.1.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 선정 o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o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o 대국민 홍보 강화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현장 조사 및 이동특성분석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2절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4.2.1 상 황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00개 지역(시·도/시·군)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 세부 내용

o 신종·재출현 감염병(사스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지역에서 00명(두) 발생

- 발생 경위 등(의심환자발생보고서 붙임 2 참조)

o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국내 00지역 : 생략

o 조치 사항

- 보건복지부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해외발생 모니터링

- 환경부 :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 및 포획 지원

o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4.2.2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o 생물다양성과
(나) 초동조치지원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다) 대응조치지원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7) 대국민 홍보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라) 후속조치지원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o 생물다양성과

4.2.3 조치 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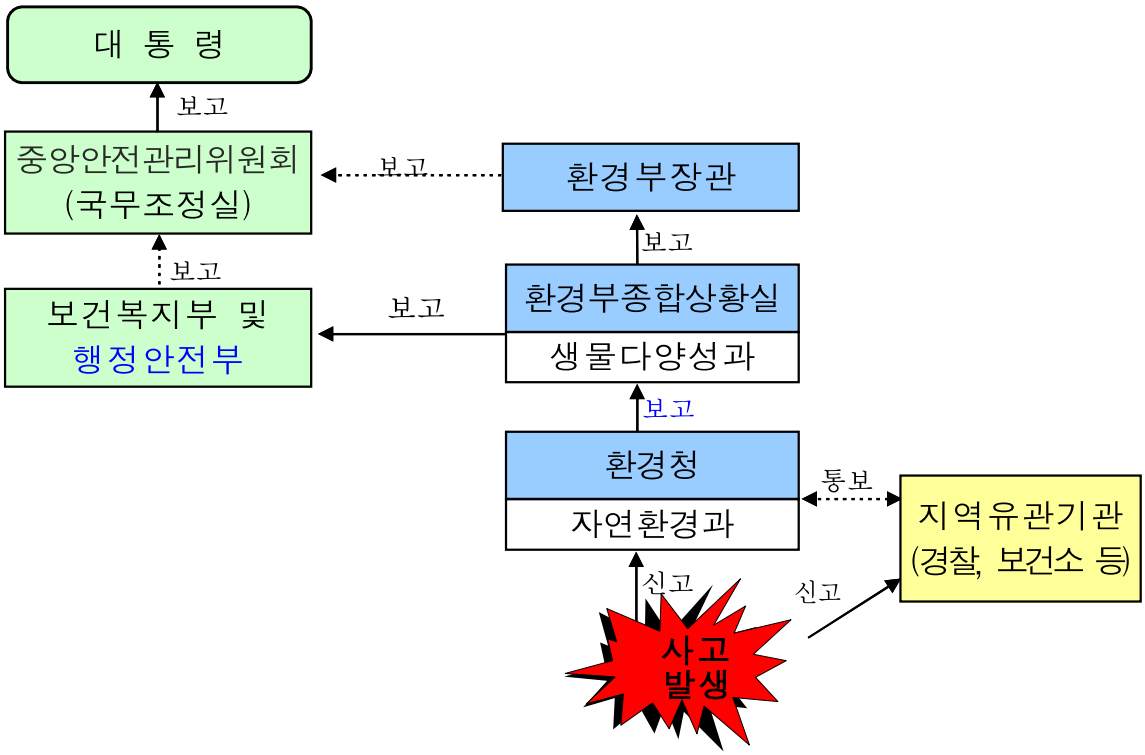

○ 접수처

- 주간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청 자연환경과

  · 환경부 : 044-201-7250 (FAX : 044-201-7261)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야간 : 환경부·환경청 당직실

  · 환경부 : 044-201-6500 (FAX : 044-201-9280)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감염병담당자에게 연락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감염병 특성 등

※ 접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접수

(가-2) 보고·전파

○ 상황보고

- 보고 및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서식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는 선구두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 참석인원 : 자체위기평가회의 구성원

○ 회의내용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 출동지시 :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환경청장

○ 출동인원/장비

구 분	검사시료채취반	야생동물모니터링반
출동인원	5명 내외	3명 내외
출동장비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사진기, 망원경 o Eppendorf tube 또는 코니컬튜브 o 나무젓가락, 위생비닐봉지 o Eppendorf tube 1.5~2ml o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o 폴리에스터 소재 면봉 o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o 9×9 종이 랙 o GPS o 분류표기용 라벨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o 관찰장비 : 쌍안경, 망원경, 삼각대, 사진기, 포충망 등 o GPS o 기록장 및 필기도구 o 조사지역 상세지도

※ 현장지휘소에 위치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 진입

○ 피해현황 등 현장 확인 및 초동조치 지원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강화 계획 수립

○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통제 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매개 야생동물 생태 특성 및 위치정보 제공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 상황반장 : 자연보전정책관

○ 상황종합 보고 : 생물다양성과장

○ 구성 :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

○ 임무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현장지휘팀 대응활동 지원
- 주관기관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 조치내용

- 검사시료 채취 일정, 지역, 수량 등 세부계획 수립
- 검사시료 운송, 검사수행, 검사결과 보고 체계 확인
- 검사시료 채취 인력 투입 및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 검사시료에 대한 신속한 감염병 검사 및 결과 보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파악·수시보고
- 매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 추적 계획 수립 및 위치 추적장치 부착
- 매개 야생동물 이동 현황 파악·수시보고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이동 예상지역 도출
- 매개 야생동물 서식 현황, 이동특성,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통제 지역 선정 및 통보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현장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정보 및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 주관기관 역학조사위원회의 참석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7)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4.2.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 선정 o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o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o 대국민 홍보 강화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현장조사 및 이동특성 분석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3절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4.3.1 상 황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발생한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00개 지역(시·도/시·군)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 세부 내용

o 재출현 감염병(사스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 지역에서 00명(두) 발생

- 발생 경위 등(의심환자발생보고서 붙임 2 참조)

o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국내 00지역 : 생략

o 조치 사항

- 보건복지부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해외발생 모니터링

- 환경부 :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 및 포획 지원

o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4.3.2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o 생물다양성과
(나) 초동조치지원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다) 대응조치지원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7) 대국민 홍보	o 생물다양성과 o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o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o 유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라) 후속조치지원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o 생물다양성과

4.3.3 조치 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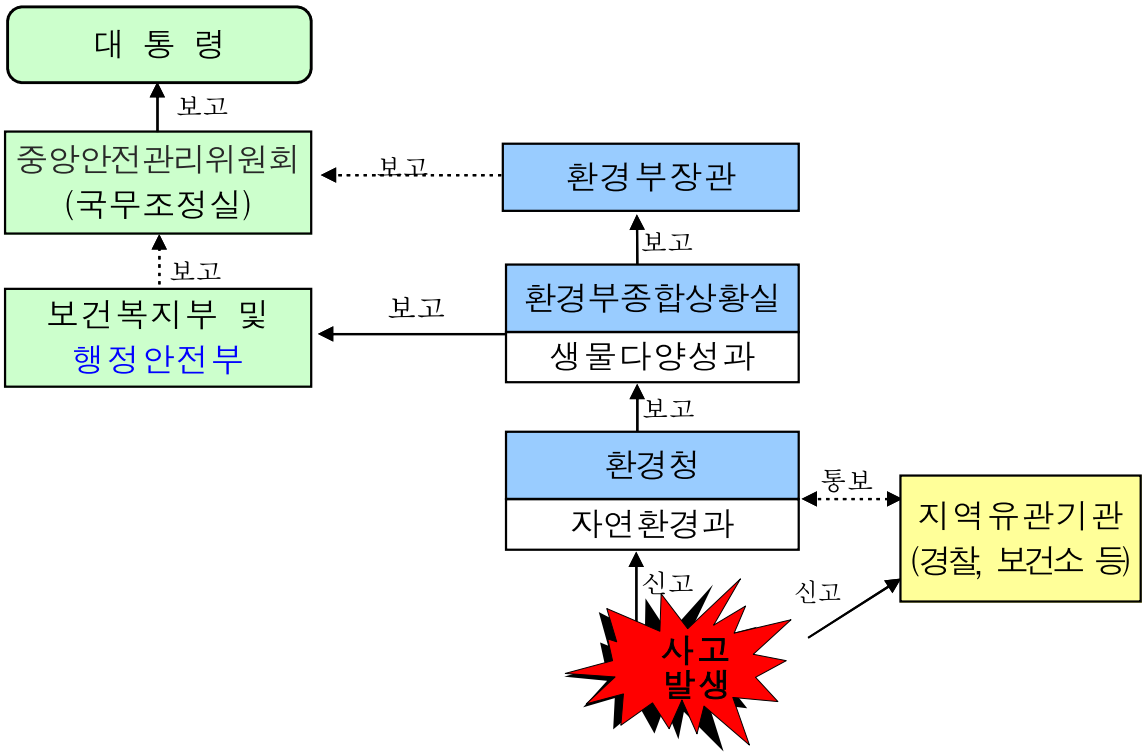

○ 접수처

- 주간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청 자연환경과

  · 환경부 : 044-201-7250 (FAX : 044-201-7261)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야간 : 환경부·환경청 당직실

  · 환경부 : 044-201-6500 (FAX : 044-201-9280)

  · 환경청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고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감염병담당자에게 연락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감염병 특성 등

※ 접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접수

(가-2) 보고・전파

○ 상황보고

- 보고 및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서식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는 선구두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 참석인원 : 자체위기평가회의 구성원

○ 회의내용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 출동지시 :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환경청장

○ 출동인원/장비

구 분	검사시료채취반	야생동물모니터링반
출동인원	5명 내외	3명 내외
출동장비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사진기, 망원경 o Eppendorf tube 또는 코니컬튜브 o 나무젓가락, 위생비닐봉지 o 폴리에스터 소재 면봉 o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o 9×9 종이 랙 o GPS o 분류표기용 라벨	o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o 관찰장비 : 쌍안경, 망원경, 삼각대, 사진기, 포충망 등 o GPS o 기록장 및 필기도구 o 조사지역 상세지도

※ 현장지휘소에 위치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 진입

○ 피해현황 등 현장 확인 및 초동조치 지원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강화 계획 수립

○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통제 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매개 야생동물 생태 특성 및 위치정보 제공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 상황반장 : 자연보전정책관

○ 상황종합 보고 : 생물다양성과장

○ 구성 :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

○ 임무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현장지휘팀 대응활동 지원
- 주관기관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 조치내용

- 검사시료 채취 일정, 지역, 수량 등 세부계획 수립
- 검사시료 운송, 검사수행, 검사결과 보고 체계 확인
- 검사시료 채취 인력 투입 및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 검사시료에 대한 신속한 감염병 검사 및 결과 보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파악·수시보고
- 매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 추적 계획 수립 및 위치 추적장치 부착
- 매개 야생동물 이동 현황 파악·수시보고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이동 예상지역 도출
- 매개 야생동물 서식 현황, 이동특성,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통제 지역 선정 및 통보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담당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현장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정보 및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 주관기관 역학조사위원회의 참석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7)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4.3.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비 고
생물다양성과	o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o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 선정 o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o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o 대국민 홍보 강화	o 연락처 : 044-201-7250
국립환경과학원	o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환경보건연구과 o 연락처 : 032-560-7140
국립생물자원관	o 현장조사 및 이동특성 분석 o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o 담당 : 동물자원과 o 연락처 : 032-590-7263
유역(지방)환경청	o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o 연락처 : 제4장 제3절 관련기관연락처 참조

제5장 참고자료

제1절 서 식[공통]

5.1.1.「상황보고서」 양식

○○감염병 상황 보고 [최초,중간,최종]

○○년 ○월 ○일, ○○:○○현재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팩스	

제목 :	배부처	
개 요 1. 접수시간/출처 : 2. 사고내용 3. 현장 조치사항 4. 우리부 조치사항 5.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중간·최종보고서에 작성) 6. 참고사항 - 언론 동향, 여론, 기타	장 관	○
	차 관	○
	○○실장	
	○○국장	
	○○국장	
	○○담당	
	청와대상황실	
	국가안보실	
	총리실	
	행정안전처	
	보건복지부	
	○○부	
	○○부	
	○○청	
	○○청	

5.1.2.「위기상황 판단/평가회의 보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① 위기상황 판단/평가회의 보고서

② 위기유형			
③ 경보내용			
④ 보고번호		⑤ 기관명	
⑥ 관련근거(출처)			
⑦ 통보기관			
⑧ 1. 관련상황/정보 ⑨ 2. 분석/판단 ※① 3. 조치사항			
※② 작성자	○○국·실 ○○과 직책 (성 명) (전화)		

- 작성요령

① 보고서의 종류 : 위기상황판단과 위기평가회의로 구분 작성
- 위기상황판단보고서 : 위기경보가 없이 상황전파 시 사용
- 위기평가회의보고서 : 위기평가회의 후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

② 위기유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유형, 또는 간략하게 제목 서술

③ 위기경보 내용을 표시하거나 없을 시에는 빈칸으로 둠

④ 보고번호 : 부처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⑤ 기관명 : 부처/기관명 기재

⑥ 관련근거 : 정보의 출처로서, 언론, 문서, 직무 등

⑦ 통보기관 : 관련보고서 전파 부처/기관

⑧ 관련상황/정보 : 부처 판단 결과

⑨ 분석/판단 : 부처 판단 결과

※① 조치사항 : 부처/기관의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② 작성자 : 부처/기관의 부서와 직책 연락처 기재

5.1.3.「보도문」 양식 및 작성 예

<table>
<tr><td rowspan="5">환경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td><td colspan="3">보 도 자 료</td></tr>
<tr><td>보도일시</td><td colspan="2">00년 00월 00일(요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4">담당
부서</td><td rowspan="2">000과</td><td>담당자명</td></tr>
<tr><td>연락처</td></tr>
<tr><td rowspan="2">000과</td><td>담당자명</td></tr>
<tr><td>연락처</td></tr>
<tr><td colspan="2">배포일시</td><td>00년 00월 00일(요일) / 총 0매(붙임 0매 포함</td></tr>
</table>

00국가 야생동물 000 질병 감염 확인

□ 금일(0000.00.00) 00국가 00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동물에서 신종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었습니다.

□ 00국가 감염병 관리 당국은 병원체가 검출된 즉시 국제기구 및 인접국가 등에 검출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용한 채널을 통해 상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향후 000 질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될 것입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000과 000(☎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참고자료

5.2.1.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가. '08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일 시	'08.4.1.~'08.5.14.
장 소	전북 김제 등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피해현황	o 33개 농장에서 발생 o 670개 농가 8,138천수 살처분 - 17천여명 살처분 참가
주요조치	o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o AI 인체감염예방 현장조치 - 살처분자 등 고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으로 인체감염 차단 o AI 인체감염 감시망 구성 - 인플루엔자 감시망, 응급실 감시망, 지역사회 폐렴감시망 등을 AI 환자감시망으로 통합 운영 o 인체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o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평 가	o AI 노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체감염 사례없이 유행 종식 o 신속대응반의 적극적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o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 전략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적 지휘체계 유지 o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로 효율적 의사 결정 o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으로 닭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필요성 확인 o 대도시, 소규모 농장, 재래시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에 어려움 o 환자후송, 격리조치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매뉴얼 필요성 대두

나. 대형 급식업체에 의한 대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

<table>
<tr><td>일 시</td><td>o ’06. 6. 16~6. 23</td></tr>
<tr><td>장 소</td><td>o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26개 중·고교, 관공서 급식소</td></tr>
<tr><td>피해현황</td><td>o 수도권 지역 총 26개 학교 학생 2,922명(폭로자 30,434명)의 집단설사환자 발생</td></tr>
<tr><td>기관별
주요역할</td><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역 할</th></tr>
<tr><td>시·군·구</td><td>보건소</td><td>ㅇ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td></tr>
<tr><td rowspan="2">시·도</td><td>보건위생(정책)과</td><td>ㅇ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및 지휘</td></tr>
<tr><td>보건환경연구원</td><td>ㅇ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td></tr>
<tr><td rowspan="3">질병관리본부</td><td>전염병관리과</td><td>ㅇ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ㅇ상부기관 보고</td></tr>
<tr><td>역학조사과</td><td>ㅇ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ㅇ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ㅇ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td></tr>
<tr><td>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td><td>ㅇ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td></tr>
<tr><td rowspan="3">관련부처</td><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ㅇ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td></tr>
<tr><td>교육과학기술부</td><td>ㅇ역학조사 협조</td></tr>
<tr><td>환경부</td><td>ㅇ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td></tr>
</table>
</td></tr>
<tr><td>평 가</td><td>o 금번 유행이 ○○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당일,
- 서울시교육청은 ○○업체가 제공하는 40개교 급식 잠정중단
o 식약청은 ○○업체 4개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73개교 급식중단 조치를 하고, 기업체 등 총 436개 집단급식소 납품 식자재 중 문제 식자재 공급 중단
o 금번 대형급식업체 관련, 감염병예방관리 조치를 함에 있어관계부처간 업무중복기능이 표출되어 기관간 명확한 업무분담 및 의사소통의 상시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o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이 매우 취약한 곳임. 따라서 무엇보다 각급 학교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시 적극적인</td></tr>
</table>

	협조 필요 o 감염병관리 당국에서도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단체생활을 하는 기관대상 감염병예방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함

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일 시	'09.4.28.~'10.4.1.
장 소	국내 16개 시·도 및 해외국가
피해현황	o '09.5.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10.1.4일까지 763,761명의 확진환자 확인. '10.6.12일까지 총 270명의 사망자 발생
주요조치	o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 대책본부 구성 o 입국자 발열감시,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 전화추적조사 o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확대운영 및 내성주·변이주 감시 o 환자관리 - 유행초기 국가격리병원 격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o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대응체계 구축 - 의약품, 장비 추가비축 및 치료 거점의료기관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및 세부지침 개발, 배포 o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o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홍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각종 안내문 배포, 콜센터 운영 o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평 가	o 국가 역량의 총체적 동원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정부의 역량 집결 - 의료단체와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협조체계 o 장기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조치의 산물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06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국가격리병상 확보, 백신공장 건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신설 등

	o 새로운 감염병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한 대응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거점병원 지정,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등

5.2.2.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 표준문안 예시

감염병 분야	〔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가급적 철새 집단서식지 출입과 새를 만지는 행위를 삼가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분야	〔보건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전력부족	〔산업통상자원부〕 한파(폭염)에 의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부족 우려,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안전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시○○분 ○○도○○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호기에서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였습니다.
교통통제	[국토교통부]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바랍니다.

5.2.3.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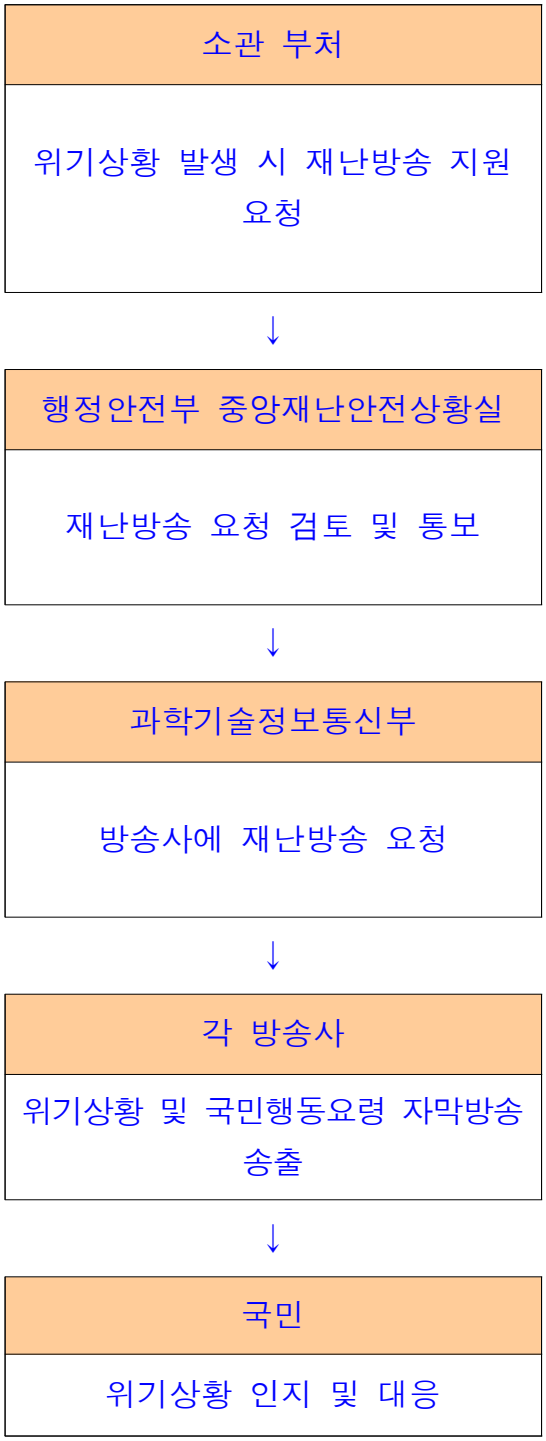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과기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CBS) 지원 요청

-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서비스(CBS) 송출 내용을 요청 하거나**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지원 요청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을 활용해 사용기관이 메시지를 재난상황실로 송출 요청**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요청 검토 및 통보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문자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해 일반휴대폰(2G) 및 스마트폰(3G) 문자 자동 전송 요청

↓

해당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기지국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사군구 지역별로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문자 60자 내외 전송

↓

휴대폰 가입자(2G·3G)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5.2.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2015. 6월말 기준)

구 분 (기관수)	합 계 (344)	중앙행정기관 (40)	지방자치단체 (246)	교육기관 (17)	정부산하기관 (41)
사용자수	**16,983**	2,797	13,128	540	518

□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 메시지 작성 화면

5.2.5.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 '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실시 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기상청	→ 행정망	행정안전부	→ 행정망	미래창조과학부	→ 전용회선	각 방송사
기상특보		재난안전상황실		비상안전기획관실		수도권, 지방

□ 주요기능

○ 재난방송 DATA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방송사로 1분 이내 자동 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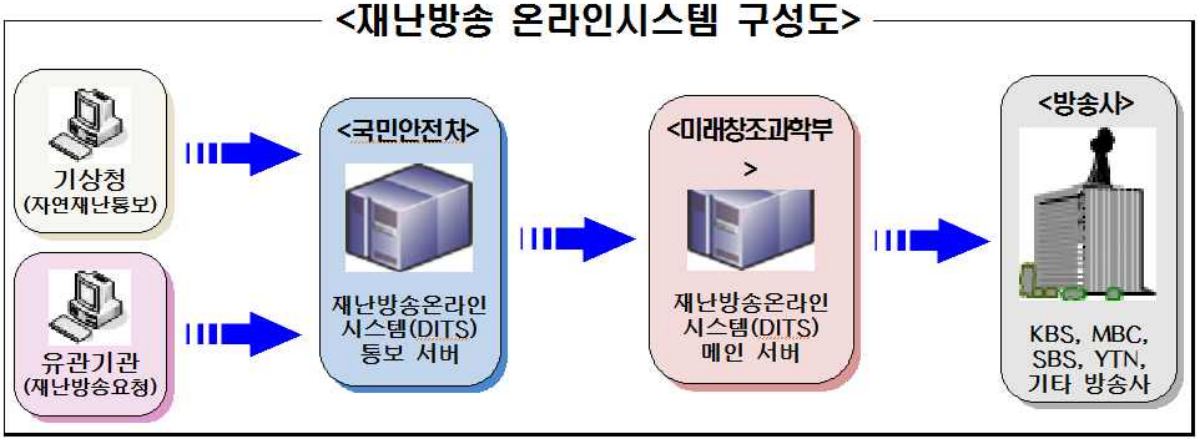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2010년부터 운영 중)

5.2.6.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환경부)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환경부)

□ 사스와 야생동물과의 관계

○ 야생동물이 사스를 전파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WHO 발표)

○ 다음 3종에서 SARS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또는 항체 검출

- 마스크팜시비트(Masked Palm Civet, 사향삵과 동물), 너구리(Racoon Dog), 중국족제비오소리(Chinese Ferret Badger)

□ 외국의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사례

○ (일본) 사스 관련종 3종의 수입금지('03.7.14)

○ (호주) 마스크팜시비트·노루 수입금지, 족제비·너구리는 동물원용만 수입허용

○ (중국, 미국 등) 야생동물로부터 사스 전파 가능성을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없어 수출입 규제를 위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음

※ 단, 미국은 관련 동물을 가급적 수입하지 말 것을 권고

□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

○ **중국족제비오소리**를 수출입허가대상 야생동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3-184호, 2003.10.11)하여 수입 불허 법적 근거 마련

○ **사스주의보 발령**시 **마스크팜시비트**(사향고양이), **너구리, 중국**

족제비오소리 등 3종은 수입허가권자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지사(시장·군수 위임)에게 **수입을 불허토록 지시**

- 마스크팜시비트를 9개국(인도,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수입하는 경우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Ⅲ에 해당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허가)**

- 너구리, 중국족제비오소리 및 인도 등 9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마스크팜시비트를 수입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법적 근거 : 동법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

  ※ 단, SARS 전파 가능성이 없는 가죽 및 피혁제품 등 가공품은 현행대로 수입허가

○ 추후 SARS 관련성이 밝혀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위의 방안에 준하여 조치

5.2.7. 야생동물 서식밀도 등 실태조사(평상 시)

야생동물 서식밀도 등 실태조사(평상시)

□ 야생동물 실태조사

○ 조사지점수 : 전국 810개 조사구

○ 조사횟수 : 격년제로 조사(2년 1회, 405개 조사구)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총괄), 유역(지방)환경청(조사)

○ 조사내용

- 수렵동물(16종) 및 환경지표동물(10종) 개체군 변동 및 분포 조사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시기 : 매년 1월중

○ 대상 : 전국 200여개 철새도래지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 조사내용 : 겨울철새가 도래한 전국의 습지에서 동일한 기간에 동시 조사(개체수, 종류 등)실시

□ 대규모 철새도래지 현황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1 ~ 익년 3월

○ 대상 : 철원평야, 한강하구, 천수만, 금강하구, 영암호 등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 조사내용 : 겨울철새 중 가장 많은 오리·기러기류 등 물새류 대상 도래 종 및 개체수 모니터링

5.2.8.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

발생 상황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 유사시 대비 방역대책 수립 및 점검 • AI 의심동물 신속 신고체계 구축·점검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예찰 • 위기대응 훈련실시
① 철새 이동/유입시기 (10월~5월) ② 감염 의심 동물 발생 ③ 6~9월 가금 발생	주의	• 환경부 AI 대응상황반 구성 검토 • 현장 대응 기동반 구성(의심신고 출동) • AI 의심동물 신속 신고체계 운영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예찰 강화 • 철새도래지 이동상황 모니터링 • 현장 주변 철새 도래상황 조사 • 위치추적기 부착 조사
④ 국내 가금 발생 (10월~5월)	심각	•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 환경부 AI 대응상황반 운영 • 중점예찰지역 확대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현장 기동 대응반 운영 • 방역기관과 긴급 방역조치 공동 대응 • 발생·검출지 주변 야생조류 도래상황 조사 • 발생·검출지 주변 야생조류 분변조사 강화 • 동물원 등 조류사육기관 방역 강화 • 소속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 간 대책회의 정례화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관심 또는 주의 단계	• AI 대응상황반 해제

1.『관심』단계

◆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평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과 AI 상시예찰 결과 상호공유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상시예찰 총괄 ◦ 야생조류의 AI 감염 의심 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체계 운영 ◦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 상황 조사 결과 전파 ◦ 위기대응 훈련 실시 ◦ 유관기관 대상 AI 대응책 교육
국립환경과학원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예찰계획 수립 및 시행 ◦ AI 검사 및 결과 전파 ◦ 해외 AI 발생상황 조사
국립생물자원관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상황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지역 폐사체 관찰, 주요 서식종 파악 ◦ 소독약품 등 비상 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 야생조류 AI 방역 비상연락망 점검 ◦ 감염의심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체계 구축 ◦ 관내 철새도래지 현황 파악 ◦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수립 ◦ 유사시 대비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2.『주의』단계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5월), 주변국 철새에서 검출시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여름철(6~9월) 농장 발생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 야생조류의 AI 대응상황반 구성 검토 ◦ 소속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산하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의심 야생조류 발견 시 유관기관 신속 전파 ◦ 감염의심 야생조류 신고 홍보 ◦ 야생조류 AI 홍보 활동
국립환경과학원	◦ 현장기동대응반 구성(의심신고 시 출동) 검토 ◦ 과학원 상시예찰 및 조기예찰 실시 ◦ 주변국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 파악
국립생물자원관	◦ 대규모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월 1회)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지역 폐사체 관찰, 주요 서식종 파악 ◦ 야생조류 AI관련 신고 전화 운영 ◦ 감염의심 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상황 점검 ◦ 관내 철새도래지 현황 파악 ◦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유사시 대비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3.『심각』단계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5월)에 농장 발생시

◆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 야생조류의 AI 대응상황반 운영 ◦ 소속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산하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의심 야생조류 발견 시 유관기관 신속 전파 ◦ 감염의심 야생조류 신고 홍보 강화 ◦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 야생조류 AI 홍보 활동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 현장기동대응반 운영 ◦ 과학원 상시예찰 및 조기예찰 강화
국립생물자원관	◦ 대규모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월 1회)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 강화 ◦ 야생조류 AI관련 신고 전화 운영 ◦ 감염의심 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상황 점검 ◦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조치 시행 ◦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원 등 전시·관람·보전시설	◦ 인근 지역 가금 발생 현황 점검 ◦ 비발생 지역에서 조류관련 먹이자원의 확보 및 비축 ◦ 사육 기관 내 방역 및 예찰 ◦ 감수성 동물의 이동 금지
야생동물구조센터	◦ 인근 지역 가금 발생 현황 점검 및 발생 인근 지역 구조제한 ◦ 비발생 지역에서 조류관련 먹이자원의 확보 및 비축 ◦ 사육 기관 내 방역 및 예찰 ◦ 감수성 야생조류 폐사체 반입 금지

4. 진정 및 종식단계

위기경보 조정 시 마다 소속·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시 야생조류 예찰, 상황반 운영 등 조사 및 대응 범위를 변경한다.

5.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AI 위기경보단계에 관계없이 하절기에는 「주의」단계, 동절기에는「심각」단계의 조치사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세부사항은 제6장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에 따른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발생시 전파·대응체계(상황근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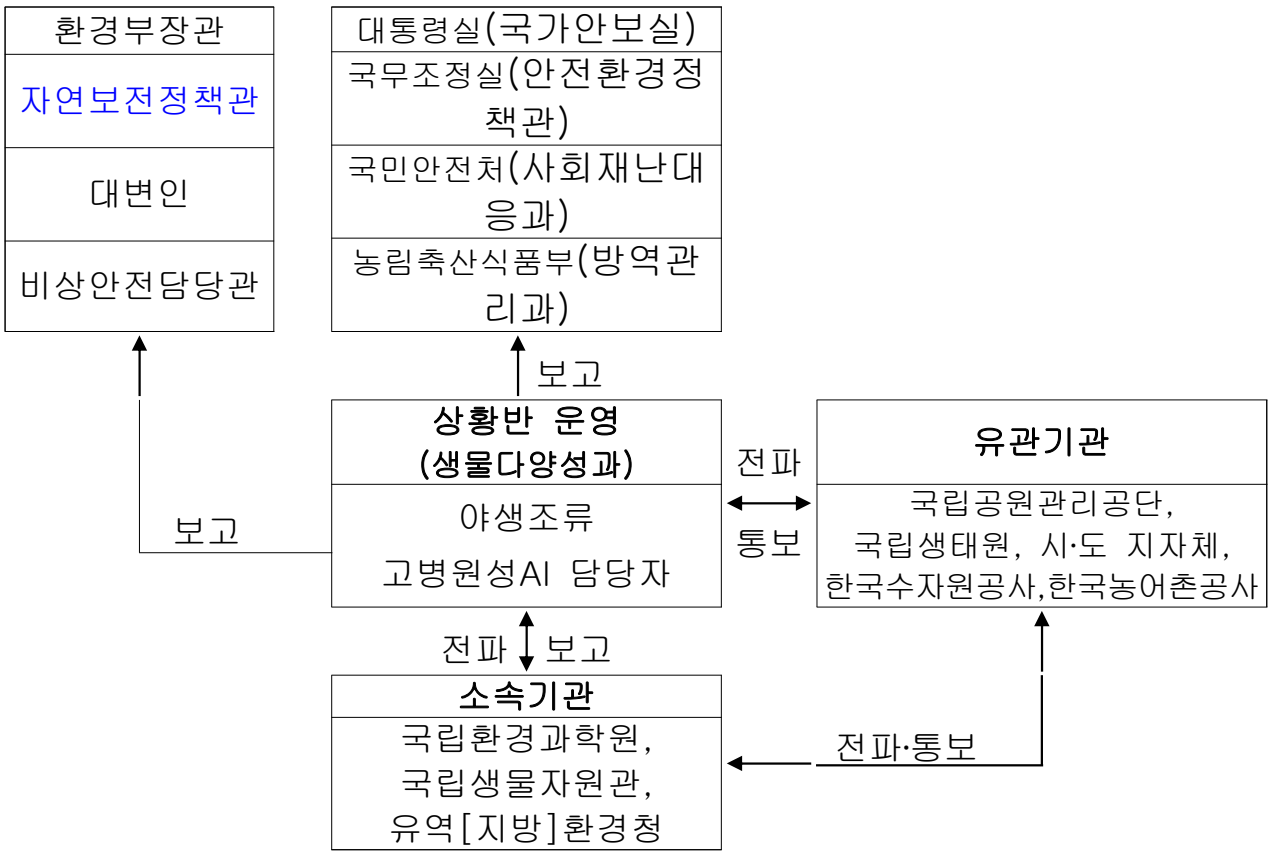

철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2. 12.

환 경 부

Ⅰ	총 칙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철새도래지에서의 낚시, 탐조 및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 및 철새가 휴식하는 철새도래지에 미칠 수 있는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가 목적임

2. 용어의 정의

가. "철새도래지"란 일정 이상의 종 및 개체수의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머무는 곳으로 주로 나그네새 및 겨울철새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철새도래지라고 칭함

나. "나그네새"란 번식 전후 시기인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새로 특정 시기·지역에 많은 수가 무리를 지어 이동·서식하는 경향이 있음

예) 서해안 갯벌에 봄과 가을 통과하는 도요·물떼새류, 섬 및 내륙의 특정 지역을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솔새 및 딱새류 등 많은 종

다. "겨울철새"란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월동하는 철새로 무리지어 이동·서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멸종위기종이 많이 포함됨

예) 독수리, 두루미류, 오리류, 기러기류 등

라. "여름철새"란 우리나라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번식하는 철새로 특히, 번식기간(대부분 4~6월에 집중)에는 방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함

예) 백로류, 제비, 개개비, 쇠제비갈매기 등

3. 철새도래지에서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지역행사)

가. 낚시

나. 탐조행사

다. 사진촬영

라. 이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체의 지역행사

Ⅱ 철새도래지 내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공통 고려사항

1. 행정기관 및 주최기관 유의사항

가. 철새의 쉼터인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휴식 및 취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위(지역축제 행사)를 허용한다.

나. 적정한 참여자 수와 적정 행사 위치 및 시기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학술단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다. 지역 행사 참가자에게 본 가이드라인 및 철새 보호를 위한 기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연보호를 권장한다.

라. 대규모(100명 이상) 지역축제 행사 전 충분한 사전검토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2. 참가자 유의사항

가. 철새는 시력이 매우 좋고 예민하며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므로 항상 조심해야 함을 명심한다.

나. 철새서식 등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 먹이를 직접주는 행위 및 접촉하는 행위, 둥지 및 알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Ⅲ	철새를 배려하는 낚시행위를 위한 고려사항

1. 행정기관 및 주최기관 유의사항

가. 철새가 위협을 느낄만한 과도한 소음행위 자제를 위하여 확성기 및 마이크 사용을 금지한다.

나.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철새가 1km이내에 100마리 이상 무리지어 있는 경우에는 낚시는 금지한다.

다. 법적인 일출시간 30분 전부터 법적인 일몰시간 30분 이후까지 허용한다.

라. 물새의 2차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납추 및 기타 납으로 만든 낚시 제품의 이용을 금지한다.

마. 보호구역에서는 낚시를 위해 폴(pole)/낚싯줄(line)이나 로드(rod)/릴(reel)만 사용할 수 있다.

바. 호수 등에서 낚시에 활용되는 튜브 및 기타 부유장치의 이용을 금지한다.

2. 참가자 유의사항

가. 철새의 휴식 및 취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낚시 장소를 선정한다.

나.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 간다.

다. 새가 놀라서 날아가지 않도록 큰소리를 내거나 뛰지 않고 돌 등을 던져 새를 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취사, 흡연 및 자극적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 등의 섭취는 예민한 철새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가급적 피한다.

Ⅳ 철새를 배려하는 탐조행사를 위한 고려사항

1. 유의사항

가.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하여 조류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되도록 원거리를 유지하여 관찰한다.

나. 고정 탐조시설이나 임시 은폐시설, 위장텐트 또는 은폐망 등을 활용하여 몸을 은폐한 후 탐조한다.

다. 주변 환경과 다른 복장과 진한 향수는 조류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라. 새가 놀라서 날아가지 않도록 큰소리를 내거나 뛰지 말고 돌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 풀이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열매를 함부로 채취하는 등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Ⅴ 철새를 배려하는 사진촬영 및 지역행사 등을 위한 고려사항

1. 유의사항

가. 사진촬영시 가능한 탐조대 또는 임시 은폐시설, 위장텐트, 은폐망 등을 설치하여 몸을 은폐하며 망원렌즈 등을 사용하여 원거리를 유지하며 촬영한다.

나.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수나 조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다. 삼각대나 탐조대 등 촬영 장비의 설치가 초본식물이나 곤충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라. 취사, 흡연 및 자극적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 등의 섭취는 예민한 철새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가급적 피한다.

마. 마이크, 확성기, 꽹과리 등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성방가를 자제한다.

바. 철새서식 등에 방해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 먹이를 직접주는 행위 및 접촉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다.

사. 행사 종료후 쓰레기 제거 등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환경정화에 유의한다.

아. 주변 환경과 다른 원색적 복장착용 및 진한 향수는 조류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자. 철새 촬영 목적 이외의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최기관(자)은 전문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철새의 월동시기와 통과시기 및 중요 철새도래지를 피하여 개최한다(부록 참조).

2. 기타 운영 관련 권고사항

가. 습지나 초지, 관목 지역과 같이 훼손되기 쉬운 지역인 경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동로를 확보하여 통행한다.

나. 행사 참여시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시 설치된 도로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한다.

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한다.

라. 가급적 화기를 지니지 말고 직접 취사보다는 도시락 등을 준비하여 화재 발생에 유의한다.

<참고> 겨울철새 및 통과철새 중요도래지

□ 겨울철새 중요 도래지(월동기간 : 11월～익년 2월)

[중요 도래지]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철원평야	강원도 철원군	1
2	한강하구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16
3	천수만(간월호, 부남호)	충남 서산시	53, 54
4	금강하구	전북 군산, 충남 서천	70
5	동진강하구	전북 김제시	75
6	만경강하구	전북 김제시	72
7	고천암호	전남 해남군	101
8	순천만	전남 순천시	123
9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시	133
10	낙동강하구	부산시	156

[인접지역]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장항해안	충남 서천군	66
2	금강호	전북 군산시	71
3	영암호	전남 영암군	99
4	금호호	전남 해남군	100
5	여자만	전남 고흥군	122
6	낙동강하류	부산시	155

□ 통과철새 중요 도래지(통과기간: 4월～5월, 8월～10월)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강화도	인천시 강화군	19
2	남양만	경기도 화성시	34
3	아산만	충남 아산시	36
4	장항해안	충남 서천군	66
5	금강하구	전북 군산시	70
6	유부도	충남 서천군	69
7	만경강하구	전북 김제시	72
8	동진강하구	전북 김제시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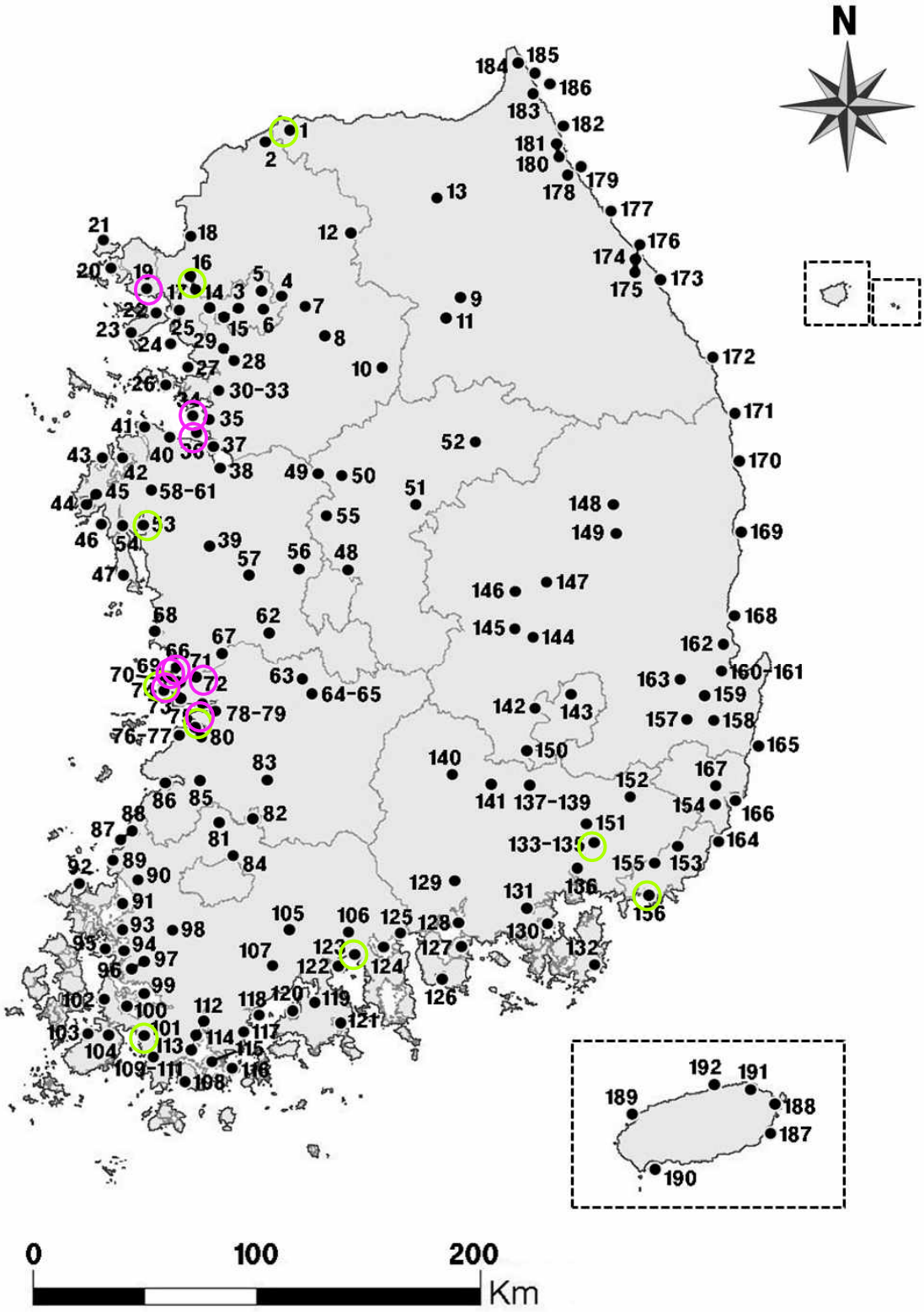

<그림>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 지점 192개소와
겨울철새(녹색) 및 통과철새(적색) 중요 도래지

제3절 관계기관 연락처

『감염병』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2018. 4월 현재)

부 처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4)202-2508, 2507 043)719-720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감염병협업담당관	044-205-1541 044-205-6158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59
해양경찰청	외사과	044-205-2568/246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2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법무부	비상기획담당관	02)2110-3012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8
	항만운영과	044)200-578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	044)203-4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5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망

(2018. 4월 현재)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032-560-7140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43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27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42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1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44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1	경 기 도 환경정책과	031-8008-3513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3	강 원 도 환경정책과	033-249-2582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1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25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4-0984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041-635-4420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70-1855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14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50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061-286-7144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4893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3-950-3024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4211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4161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032-440-3533	제 주 도 환경자산보전과	064-710-6074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연락처

(2018. 4월 현재)

지부명	주 소	연락처	지회수	회원수	비 고
서울/인천/경기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로 321	031-542-3480	28	375	
강원	강원 인제군 남면 시댁골길 6	033-461-4010	18	402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186-3	043-265-5845	12	220	
대전/충남/세종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2	041-932-6068	16	371	
대구/경북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237	054-481-0617	23	473	
부산/울산/경남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055-759-2626	22	177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비아로 38	062-374-6969	22	201	
전북	전북 익산시 인화동 1가 184-3	063-853-7888	19	258	
제주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2길24	064-702-2682	4	179	
계			164	2656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연락처

(2018. 4월 현재)

센터명	개소일	소재지	연락처
서울	2017.07.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8659
부산	2008.12.16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	051-209-2091
대전	2015.10.08	대전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042-821-7930
울산	2008.04.18	울산시 남구 옥동 506-3	052-256-5322
경기	2009.03.2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132-93	031-8008-6212
강원	2006.09.2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033-250-7504
충북	2007.09.2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양청4길 45	043-216-3328
충남	2010.09.09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1	041-334-1666
전북	2009.04.30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번지	063-850-0983
전남	2007.40.11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061-749-4800
경북	2006.05.16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44	054-840-8250
경남	2008.05.14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4-9575
제주	2010.11.25	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064-752-9982
인천	2018.03.27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20(솔찬공원내)	032-858-9702

소관 부서

연락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전화	044) 201-7250
	FAX	044) 201-7261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